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6고정136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검 사 박철량(기소), 최종현(공판)
판 결 선 고 2026. 6.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2세)에게 2,200만 원을 대여한 채권자이다.

1.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
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
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8. 26. 07:52경 경산시 C아파트 ○○○동 ○○○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돈 도 이년아, 씨발년아, 개 같은년 이네 이거, 완전 시발런이, 도둑년, 돈 내놓으라고"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피해자의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거 아들한테 내 출근할끼다 좇 같은거, 고통 존나게 줄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B 2025. 8. 26. 휴대전화녹음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C아파트 D동 5,6라인 CCTV) -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권추심 관련 협박의 점),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2호(채권추심 관련 야간 방문에 의한 사생활 침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채권추심 관련 협박으로 인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의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채권 추심 목적으로 채무자의 집을 찾아가 심한 욕설을 함과 아울러 아들의 직장까지 찾아갈 것처럼 협박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범죄전력에서 법 경시적 태도가 확인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고지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지한다.

판사 노종찬 _____